

##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규탄한다.

서독정부는 1954년 5월 부산에 적십자병원을 설립해 1959년 3월까지 운영하였다. 우리는 대한민국국민의 일원으로서 서독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독일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외교에서 부당하게 다루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연코 반대한다. 독일 적십자병원은 정전협정 이후에 활동했기 때문에 2018년까지도 6·25전쟁 시기 의료지원 5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2024년 8월 2일, 독일은 “유엔사”에 가입했다. 그러나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심된다.

첫째, 1953년 4월 7일 아테나워 서독 수상이 야전병원 파견을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에게 제안했을 당시 독일은 완전한 외교주권이 부재한 상태였다. 따라서 당시 결정이 서독의 정당한 주권행사범위에 있었던 것인지 의심된다.

이는 이튿날 아이젠하워대통령의 수락문서가 본(Bonn)에 있는 미국고등판무관실로 부터 온 것에서도 확인된다. 1949년 서독 분단정부출범과 동시에 적용된 점령조례(Besatzungsstatut)에는 외교·안보문제 등을 점령국 고등판무관(Hohe Kommissare)들이 통제·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전쟁 중인 한국에의 의료지원은 분명 외교·안보문제였고 점령조례는 1955년 독일조약 발효로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따라서 1953년 한국전쟁 의료지원은 서독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독일은 2차대전 전범국으로 유엔헌장 제107조가 명시한 유엔의 적국이었다. 유엔헌장 제53조는 이들 적국의 침략정책 재발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안보리허가조차 받을 필요가 없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다. 서독의 재무장화는 국내는 물론 주변국들에게 침략정책의 재발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졌고 특히 영국·프랑스의 반대가 거셌다.

그럼에도 이 제안이 성사된 것은 서독재무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서독재무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미국고등판무관 맥클로이가 한국전쟁발발이후 미국무성의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전쟁이전부터 서독재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던 미 합참과 국방성의 계획을 국무성이 합의해 주기에 이른다.

1950년 9월 뉴욕외상회의에서 미국은 주도권을 쥐고 서독재무장에 반대하는 영국과 프랑스를 설득하였다. 점령조례하에서 외교주권이 없던 서독의 한국전 지원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다름 아닌 서독점령국인 미국의 입장변화 때문이었던 것으로 의심된다.

둘째, “유엔사령부”가 서독의 제안을 수용한 것은 정전이후인 1953년 9월 23일이었다. 이에 따라 서독과 미국정부는 1954년 2월 12일 ‘한국에서의 유엔작전에 관한 독일적십자병원 지원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국지원목적을 표명하면서도 한국정부와는 어떤 협정도 체결하지 않았던 것이 의심된다.

1950년 6월 27일 유엔의 군사조치는 없었지만 설령 안보리의 군사조치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그 효력은 정전협정과 함께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국제법학계의 다수의견이다. 그런데 “유엔사”는 정전이전에 제안된 서독의 제안을 정전이후에 수용함으로써 정전을 무시하는

양태를 보였다. 안보리결의를 왜곡하여 결성된 “유엔사”는 어떤 국제법적 제약도 받지 않는 것처럼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했다.

서독은 아마 미국을 개별국가로서가 아니라 “유엔군”을 대표하는 국가로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1994년 6월 유엔사무국법률과는 ‘유엔법률백서’의 ‘주한유엔사의 상태’란 글에서 “유엔사”란 명칭이 유엔과 무관한 “잘못된 이름”(misnomer)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미·독 협정문에는 서독의 참여가 유엔작전(UN operation)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유엔의 조치가 아닌 각국의 조치일 뿐임을 유엔사무국법률과는 다시 명확히 했다. 한마디로 한국전쟁에서의 유엔작전은 없었다. 독일정부는 미국만을 믿고 부당한 협정을, 부당한 주체와 체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부당한 행동을 한 셈이었다.

서독은 한국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면서도 한국정부와 어떤 협정도 체결하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는 한국정부가 “유엔사”에 절대복종할 때만 가능한 협정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병원으로 쓰던 학교건물 반환문제가 발생하자 한국정부와 아무런 협정도 맺지 않았던 독일정부는 속수무책이 되었다. 그것은 “유엔사”가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을 위한다는 독일정부의 의도가 의심되었다. 이제 독일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셋째, 미·독 협정에 따르면 한국민사원조사령부(KCAC: the Korea Civil Assistance Command)가 독일적십자병원에 대한 작전통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민사원조사령부는 유엔과 무관한 조직이었으며, 독일적십자병원은 전쟁에 관련한 어떠한 작전통제도 받은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왜 “유엔사”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이제와서 유엔사에 가입하는지 의심된다.**

한국민사원조사령부(KCAC)의 복잡한 변천사는 그 시작과 끝을 보면 실체가 분명해진다. 1950년 11월 4일 미제8군 산하에 “유엔사령부보건복지파견대”(UNPHWD: UN Public Health and Welfare Detachment)가 설치되고 12월 10일 이 조직은 유엔민사원조사령부(UNCACK: U.N. Civil Assistance Command)으로 개편된다. “유엔사령부보건복지파견대”는 “유엔사령부” 산하가 아닌 미제8군 산하의 8201부대로 창설된 것이었다. 애초 “유엔사”와 무관한 조직으로 출발하였으나 미국의 임의조치에 따라 후에 “유엔사”에 편입되었을 뿐이다. 정전 후 미국원조기구의 위상을 유엔과 구분하기 위해 UNCACK을 KCAC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발생했다. UNCACK을 KCAC으로 개편할 때 명칭에서 ‘UN’을 탈락시켰는데, 이는 KCAC이 유엔원조와 구분되는 미국원조기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조치였다. 상황이 이럼에도 독일적십자병원 관계자들이 “유엔사”의 작전통제하에 있었다고 여기는 것은 사실과 다른 착각일 뿐이다.

정전 이후 병원을 개설할 무렵 전상군인들은 충분히 치료를 받고 있었기에 야전병원기능은 불필요했고 독일은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자선활동으로 임무를 바꾸는데 동의해야 했다. 독일적십자병원은 시작부터 작전이 아닌 자선·봉사활동을 한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한국민에겐 가치있는 일인데 왜 무리하게 자신들의 활동을 “유엔사”활동으로 해석하고 “유엔사”가입의 논리로 삼는지 의심된다.

**넷째 서독은 197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사”해체결의에 찬성했다. 그런데 미국이 해체약속을 어기며 유엔정신을 유린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기는커녕 “유엔사”강화에 들러리를 서고 있는지 의심된다.**

1973년 9월 18일에야 동서독은 유엔의 적국에서 유엔회원국이 되었다. 그리고 2년 뒤인 1975년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사”해체를 약속한 유엔총회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독일 국방부장관은 2024년 8월 2일 독일의 “유엔사”가입기념식에서 “우리는 ‘힘의 법칙’이 아닌 ‘규칙의 힘’을 믿는다”고 밝혔다. 힘의 법칙을 일극패권주의의 논리로, 규칙을 힘을 유엔현장과 국제법의 논리로 생각한다면, 독일의 “유엔사”가입결정은 자신의 신념을 스스로 탄핵하는 행위인 것이다. 70년 전에야 “유엔사”의 실체를 몰라서 그런 행동을 했다 해도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유엔현장을 우롱하며 유엔정신을 기만해온 대표적 기구, “유엔사”에 들러리를 서는 것이 일류국가인 독일의 위상에 맞는 것인지 우리는 의심하게 된다.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고 “유엔사”가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의 행태를 규탄하고자 한다.